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2021. 6. 9.(수)
제391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충 청 북 도 의 회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이상정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1년 5월 31일

○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3. 제안이유

○ 관계 법령에 따라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미비한 조문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통주와 관련된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6조)

○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미비한 조문을 수정·보완함(안 제1조, 안 제4조)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우경수)

가. 제출배경

○ 본 조례는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을 통한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전통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우수 전통주 활성화 지원 사업,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전통주 홍보 판매관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조례상의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 도내 전통주 제조업체 현황 : 103개업체 133개면허

- 종류별(133개) : 탁주 45 / 약주 15 / 과실주 46 / 증류식소주 7 / 일반증류주 4/ 기타 16
- 지역별(103개) : 청주 11 / 충주 13 / 제천 5 / 보은 4 /옥천 7 / 영동 42 / 증평 1 진천 3 / 괴산 4 / 음성 6 / 단양 7

나. 주요 검토내용

○ 안 제2조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술” 정의를 개정함

- 「주세법」 전부개정사항 반영하여 “술”의 정의를 개정함

○ 안 제6조는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조항 신설**

- 「지방재정법」 제17조[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4호)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지출은

---

2)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전통주 관련된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 기타 개정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미비한 조문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다. 종합 검토의견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사무를 수행하려면, **조례에 보조금 지출 근거를 규정**하여야 하므로,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 기타 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미비한 조문 등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